

행복한 도민
신뢰받는 의회

제342회 임시회
2015. 9. 11.(금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건설소방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23
----------	-----

2015. 9. 11.(금)
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광진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5년 8월 24일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8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9월 7일

(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이광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2015년 7월 1일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안전실이 신설되고, 이에 따른 직위 및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‘담당국장’ → ‘담당실장’으로 명칭 통일(안 제8조제3항)
- 기타 조문 정비 등(안 제5조제2항, 제7조제1항, 제8조제3항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김학두)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라 소관부서 조례의 직위 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5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,
-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이,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라 소관부서 조례의 직위 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제42조까지의 규정”을 “제42조까지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담당국장”을 “담당실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재난관리업무”를 “재난관리기금 업무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재난관리 업무”를 “재난관리기금 업무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담당국장”을 “담당실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법 제40조부터 <u>제42조까지</u>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 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 요금액의 100분의70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 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.</p> <p>③·④ (생 략)</p> <p>제7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을 효율 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</p> <p>1. 기금운용관 :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</p> <p>2. 분임 기금운용관 : <u>재난관리 업무</u> 담당과장</p> <p>3. 기금출납원 : <u>재난관리업무</u> 담당사무관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위원장은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 하는 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.</p> <p>④ ~ ⑦ (생 략)</p>	<p>제5조(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제42조까지</u>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회계공무원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u>담당 실장</u></p> <p>2. -----<u>재난관리기 금 업무</u> -----</p> <p>3. -----<u>재난관리기금 업 무</u>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<u>담당실장</u> -----.</p> <p>④ ~ ⑦ (현행과 같음)</p>